신용거래설명서

(2023.09.18 개정)

신용거래는 일반 현금거래와는 달리 시장변동에 따라 손실의 위험성이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거래를 하시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동 거래의 구조나 위험성 등에 관하여 본 설명서 및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목적 .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명서는 신용거래를 하려는 고객에게 신용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신용거래의 위험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자료입니다.



《목 차》

1. 요약(핵심)설명서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발생가능한 불이익 등 민원과 상담이 빈번한 숙지 필요사항 민원, 상담연락처
2. 신용거래제도 개요 □ 신용거래의 개념
□ 신용거래의 구조
3. 신용거래의 위험성
4. 기타 주요사항
□ 약관.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
□ 유통금융매수증권 관련 유의사항
□ 공매도 관련 보고 및 공시의무
□ 청약의 철회
□ 위법 계약의 해지
□ 자료열람요구권

I. 요약(핵심)설명서

※ [주의] 고객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구 분	주요 내용
신용거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일정률의 증거금만으로 거래하는 것 일부는 투자자 자신의 자금으로 나머지는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
100%증거금 (현금)거래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위탁증거금 100%를 납입하고 주문하는 거래
신용거래대주	- 당사로부터 빌린 증권(담보는 매도대금)으로 매도하고 상환일에 해당 증권등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통상 증권의 가격하락 예상 시 시세차익 을 얻을 목적으로 활용

※ **<은행등 신용대출과의 차이>** 은행 등 신용대출은 무담보대출로써 채권회수는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거래는 담보유지비율 하락시 등에 반대매매를 통해 즉각 채권이 회수됩니다.

또한 신용거래 이자율은 은행 신용대출에 비해 높을 수 있으며, 기간별로 차등 적용되므로 신용거래를 이용한 투자 시 예상 이자비용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발생가능한 불이익 등(민원 우려로 숙지 필요사항)

○ 발생가능한 불이익

- 신용거래융자금에 대한 담보평가금액의 비율이 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 (140%~170%)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추가담 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담보유지비율 미달 등 담보의 추가납부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요구한 기일까지 추가로 담보를 납부하지 않으면 상환기일 전이라도 필요한 수량만큼 회사가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신용융자를 행하여 고객이 매수한 증권(유통금융매수증권)이 제3자에게 대여된 경우 불가피하게 그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투자위험등급: 1등급 [초고위험]

- 당사는 신용거래의 투자위험등급을 1등급(초고위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추가담보 미납 등으로 담보주식을 임의처분 하는 경우 전일 종가의 하한가로 처분될 수 있으며 임의처분 금액은 담보부족금액을 훨씬 상회할 수 있습니다.

□ 민원과 상담이 빈번한 숙지 필요사항

Q1.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의 모든 증권 매매 시에 신용거래가 가능한가요?

- 일부 증권(예 : 증거금률 100%인 증권)은 신용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증권의 신용거래 가능 여부는 HTS, MT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나 Q2. 신용거래 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회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상환기일 전이라도 **필요 수량만큼 회사가 반대매매**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 시 전일 종가의 하한가 등으로 반대매매 대상 수량을 산정**하며, **처분금액은 담보부족금액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처분에 대한 투자손실 방지를 위해 **수시로 담보유지비율을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 Q3. 그 밖에 반대매매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
 - i)상환기일 미상환 시 ii) 이자·매매수수료·제세금 납부요구에 대한 미납입 시 등의 경우에 반대매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증권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채권회수 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보의 추가납입 요구 없이 반대매매 가능합니다.
- └ Q4. 신용거래를 만기전에 상환하거나 만기 도래 시 연장이 가능한가요?
 - 만기 전 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괴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만기 의 연장도 가능하나, 연장은 기본융자기간 단위로 [3]회까지만 가능합니다.

□ 민원, 상담 연락처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의 상담센터(1588-2145)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hygood.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п. 신용거래제도 개요

□ 신용거래의 개념

신용거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이 금융 투자회사로부터 매수에 대하여는 신용거래융자를, 매도에 대하여는 신용거래대주 를 받아 수도결제하는 매매거래를 말하며, 신용거래의 재원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나 주권을 빌려주는 자기신용과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아 고객에게 빌려 주는 유통금융이 있습니다.

□ 신용거래의 구조

1) 신용거래계좌 설정

① 약관 및 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용거래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신용거래 개시

- ① 신용거래보증금률에 따라 사전에 신용거래보증금을 납부합니다.
 - 신용거래보증금률

항 목		구 분 현금 대용		대용	합
		A종목군	15%	30%	45%
	기본형	B종목군	20%	25%	45%
융 자		C종목군	30%	20%	50%
		A,B 종목 군	45%	0%	45%
	工工ら	C종목군	50%	0%	50%
대 주		-	0%	100%	100%

- ※ 신용보증금률 내 대용사용 유무에 따라 기본형과 보수형으로 구분되며, 보수형은 현금으로만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기본형보다 계좌의 위험이 감소할 수 있음
- ② 최소담보유지비율은 신용거래융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시가상당액의 140%~170%로 종목군별로 차등적용하며, 미달시 회사는 담보의 추가납입을 요구합니다. 추가담보납 부기간은 요구일로부터 1영업일이내 입니다.
 - 최소담보유지비율

A종목군	B종목군	C종목군	신용불가 종목군
140%	145%	150%	170%

○ 계좌에 A종목군 100만원, B종목군 100만원, C종목군 100만원 보유시 최소담보유지비율 = (100만원×140%(A)+(100만원×145%(B))+(100만원×150%(C)) 300만원 = 145%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최소담보유지비율 외에 추가로 임의상환담 보유지비율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임의상환담보유지비율은 신용거래융자액 또는 신용거래대 주시가상당액의 120%이며, 미달시 고객은 담보부족 발생일 당일까지 담보를 추가납입 하여 야 합니다.

- 추가담보 납부요구는 통화내용 녹취, 전자메일, SMS 또는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등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회사는 신용거래융자를 함에 있어서 **매수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합니다.
-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또는 상 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 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평가합니다. 다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 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합니다.
- 회사는 신용거래융자를 함에 있어서 신용거래보증금을 상장주권으로 징구한 경우 당일 종 가로 평가하며, 신용거래보증금률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당일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단, 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고객과 합의한 경우에는 당해 합의에 따라 담 보증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③ 추가담보납부기간(최소담보유지비율 미만 시에는 요구일로부터 1영업일이내 이며, 임의상환 담보유지비율 미만시에는 요구일 당일)동안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는 반대매매를 통하여 임의상환정리를 합니다. 담보비율은 동일 계좌 내에 2개 이상의 신용공여(신용거래융자, 예탁증권담보융자 등) 가 있을 경우 합산하여 계산하며, 추가담보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 ④ 고객은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약정한 날에 이자를 납부**합니다.
- ⑤ 회사는 신용거래대주 담보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대주매각대금이용료(연 0.1%)를 지급합니다.
- ⑥ 회사는 고객의 신용도, 융자금액, 융자기간, 거래기간, 수수료 등 수익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결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항목		구분	보증금률		
			A 종목 군	45% (현금 15%, 대용 30%)		
LI G Z L Z II		기본형	B 종목군	45% (현금 20%, 대용 25%)		
신용거래 보증금율	융자		C 종목군	50% (현금 30%, 대용 20%)		
		보수형	A,B 종목군	45% (현금 45%)		
			C 종목군	50% (현금 50%)		
	다	주	- 100% (대용→현금)			
최소담보 유지비율	• 신용융지 • 신용대주	: 140%~1 : 120%	70%			
임의상환담보 유지비율			1	20%		
임의상환정리				보요구일로부터 2영업일째 담보요구일 익영업일		
신용거래 상환기간		,	회 연장 기능) 회 연장 기능)			
신용거래 융 자 이자적용방식	 ▶ 이자징수방식: 소급방식 결제일 기준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의 보유기간 일수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한 후 기징수된 이자를 차감하는 방식 (기간별로 구분하여 이자율을 따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 융자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 이자계산방법: (신용융자금액 X 신용이자율 X 총 경과일수/365) -기납입 이자금액 이자계산 예: 융자금 1,000만원 1/18~ 2/27 융자기간 40일 가정 성기이자 징수일 (2/1, 매월 첫 영업일) 이자금액 → (1,000만원*7.5%*13일/365)=26,712원 상환일 이자금액 → (1,000만원*8.5%*40일/365)-26,712원=93,150원-26,712원=66,438원 ※ 체차방식으로 징수하였을 경우와 차이점 (체차방식으로 상기 이자 계산 시): 이자금액 8,220원 차이 발생 정기이자 징수일 (2/1, 매월 첫 영업일) 이자금액 - (1,000만원*7.5%*13일/365)=26,712원 상환일 이자금액 사상환일 이자금액 상환일 이자금액 상환일 이자금액 사상환일 이자금액 사상환의 이자금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 (1,000만원*7.5%*17일/365)+(1,000만원*8.5%*10일/365)=58,218원 □ 회사 홈페이지 게시 고객센터 > 업무안내 >신용공여 안내 >신용거래융자 ※ 정부정책에 따라 기준 금리 등의 매월 재산정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향후 매월 변동될 수 있으며 매 신규로 매수되는 수량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로 대출이자가 산출됩니다.					

구 분	내 용						
신용용자 이자징수일	매월 첫 영업	매월 첫 영업일					
	 대주보증금율: 대용, 현금 순으로 100% 담보유지비율: 120% 투자자 기본 한도 초기투자자: 3,000만원 (사전교육 및 모의투자 이수 투자자) 경험투자자: 7,000만원 (최근 2년 내 5회¹) 이상 & 누적차입규모²) 5,000만원 이상) 성숙투자자: 기본 1억 (최근 2년 내 5회 이상 & 누적차입규모 5,000만원 이상 & 최초 투자시점으로부터 2년 경과자) 전문투자자: 기본 1억 (사전교육 및 모의투자 이수 투자자) 투자자 그룹별 한도 성숙/전문투자자가 기본한도 1억을 초과하여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당사 그룹별 한도까지 증액이 가능하다. 						
 대주	구분			고객 분	류 점	수	
	1 -	1000~920	919	~7 80	7	79~595	594~0
	그룹	프리미엄고객	우수	고객	<u></u>	일반고객	유의고객
	그룹별 기본한도	5억	3	3억		1억	거래불가
	주) 1. 고객 신용점수에 따른 신용공여 기본한도 - NICE신용평가(주)에서 제공하는 신용점수 기준 주) 2. HTS 및 MTS를 통한 약정시 개인고객의 최대한도 : 1억원 주) 3. 신용융자한도와 별도 적용						
	• 이자율 : 기간별 이자율(소급방식)						
대주이자	구분	기간 ~7일 이내 ~30일 이내 ~60일 이내 61일~360			61일~360일	연체이자율	
	금리	5.9%	7.5%	8.5%)	9.5%	9.9%
	• 징수시기 : 매월 첫 영업일 / 매수, 현물 상환 결제일 징수 • 징수기간 : 대출일~상환일(한편넣기) ⇒ 단, 대출일 당일 상환시 1일치 이자부과 • 이자산식 : 대주매도대금 × 이자율 ×경과일수(한편넣기)/365일(윤년의 경우 366일) • 이자율은 증권금융 대주수수료율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대주매각대금	• 이용료 : 연 0.1% (소득세 14% 주민세1.4% 원천징수) • 이용료 지급일 : 매월 첫 영업일/ 매수, 현물상환시 지급						

¹⁾ 차입 후 상환까지 마친 거래를 1회로 봄.

²⁾ 차입매도 체결가 × 상환수량

3) 신용거래대상종목

- ①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합니다.
- ② 그 외에 신용거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 거래소가 매매호가 전에 예납조치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때
 - 기타 회사에서 신용거래 불가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4) 상환

- ① 회사는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 상환기일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을 요구합니다.
- ② 고객은 매매에 의하여 상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하고자 하는 날의 전전일(휴장일 제외)에 회사에 신청하여 동 매매의 결제일에 상환하고, 현금, 주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의한 상환은 상환을 신청(16시까지)한 당일 상환됩니다.
- ③ **회사는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고객계좌에 예탁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을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하여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의 상환요구를 받고, 그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 였을 때
 -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그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 이자, 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그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 하였을 때
- ④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화내용 녹취, 전자메일, SMS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회사의 임의처분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5) 신용점수변경에 따른 대출한도 변경

NICE평가정보(주)에서 제공하는 고객의 신용점수 변경에 따라 대출한도가 증액 또는 축소 될 수 있습니다.

Ⅲ 신용거래의 위험성

신용거래는 일정률의 증거금만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투자원금에 비해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다음의 신용거래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거래융자시 투자원금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투자사례)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이며, 보증금률이 50%인 경우 500만원을 가지고 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으며 최초담보비율은 200%입니다.

(1,000÷500×100) 당일 상한가에 매입하여 하한가에 마치고 그 다음날도 하한가로 마친다면 손실액이 투자원금(500만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2) 신용거래대주시 투자원금 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 한국거래소 공시(공정공시 포함) 등이 공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모집 또는 매출의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따라) **모집(매출)가** 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 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등

(투자사례)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이며, 보증금율 100%일 때 현금 1,000만원을 담보로 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대여 받은 경우 당일 하한가에 매도하여 상한가로 마치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가 계속된다면 손실액이 투자원금(1,000만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3) 고객은 담보증권의 가격의 변동으로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하여 추가담보납 부기간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기간 이전에**

임의상환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4) 신용거래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일 때에는 고객 계좌내의 현금 및 증권의** 출고 및 대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5)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가 있는 고객은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 합니다.

신용거래 고객께서는 위에서 예시된 사항이 신용거래의 위험과 특성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신용거래의 구조 및 관련제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신 후 동 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기타 주요사항

□ 약관.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

- 1) 회사는 필요한 경우 대주매각대금 이용료율, 신용거래융자(대주)이자율, 연체이자율, 신용거래보증금률, 담보유지비율, 대용증권비율, 추가담보납부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에 대한 통지는 당해 내용을회사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예정일 전부터 1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관계법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신용거래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변경내용을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고, 그 외에는 회사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1월간 게시합니다. 이 경우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유통금융매수증권 관련 유의사항

1)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신용융자를 행하여 고객이 매수한 증권(이하 "유통금융매수증권")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 신주인수권 등 권리관계의 처리는 증권금융회사의 "증권유통금융에 부수하는 배당금 및 신주인수권 등의 처리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배당, 분배금 등을 수령하거나 신주인수권 등을 배정받아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 2)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유통금융매수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유통금융 대주를 포함한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유통금융대수 증권의 제3자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해당고객에게 지급합니다.
- 3) 고객은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의결권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유통금융매수증권이 제3자에게 대여된 경우 불가피하게 그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①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고객이 회사에 의결권 행사를 신청하여 증권 금융회사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② 이를 위해 회사는 유통금융매수증권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권금융으로부터 통보받아 고객에게 서면, 단문메세지(SMS), 전자우편(e-mail), 녹취전화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③ 고객은 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유선 등을 통해 의결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증권금융회사는 의결권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고객에게 송부합니다.

유상증자,	권리대금	(권리부 최종매매일 구주식 종가 - 권리락기준가)×대주수량
무상증자 징수시기		권리락 익익영업일
현금배당	권리대금	대주수량 × 주당배당금
선마메이	징수시기	배당금 지급일
주식배당	권리대금	(대주수량 ×배당신주 최초 상장일 종가 × 주식배당금액) ÷ 액면금액
丁当叫o	징수시기	상장일 익일
단수주 발생시		기타 감자, 회사분할, 액면분할, 액면병합, 피흡수합병 교환 이전 시 단주수가 발생하는 경우 단수주대금지급일에 권리대금징수

□ 공매도 관련 보고 및 공시의무

- 신용거래대주를 받은 고객이 공매도에 대하여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공매도 잔고 보고대상 :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종목별 총수대비 0.01% 및 평가액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

- 보고의무자 : 투자자본인
- 보고기한 : 보고의무 발생일~2영업일째 되는 날 장 종료 후(시간외 포함)까지 지체없이 금 감원 홈페이지(http://fss.or.kr)에 보고
- 공매도 잔고 공시 대상 :

발행주식 수의 0.5%이상 순보유 잔고를 보유한 투자자의 투자자명 (성명, 주소, 국적, 생년월일), 종목명, 최초 해당일을 공시

- 최초의무 발생일 : 보고기준(△0.5%)에 최초로 해당한 날
- 기준 산출 방법 : 회사(고유, 일임, 신탁, 펀드)의 순보유잔고를 합산
- ※ 공매도 잔고 공시 대상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에 자료를 전송하여 이루어지므로 투자자들은 금융 감독원에 자료제출을 하는 것으로 공시의미 이행이 완료됩니다.

□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회사와 고객간에 해당 기간 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 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서면 등(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회사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고 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위법 계약의 해지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u>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u>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자료 열람 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 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 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 설명서의 내용은 관련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설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신용거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